

【2025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】

1. 신청대상: 4학년(예정)* 재학생 중 조기취업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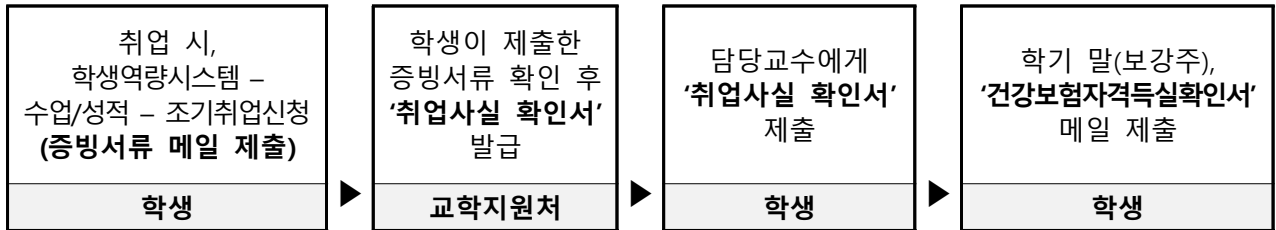
* 4학년(예정): 재학생 중 7학기 이상이고 총 취득학점(2025학년도 1학기까지)이 98학점 이상인 자

2. 조기취업자 학점인정

구분	조기취업자
출석	재직증명서 등을 근거로 인정할 수 있음
성적	시험 또는 과제 제출 등을 근거로 부여할 수 있음

※ 「학칙」 제47조(성적평가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4학년 조기취(창)업자의 경우 출석인정은 증빙서류 제출 근거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성적은 시험 또는 과제 제출 등을 근거로 부여할 수 있다.

3.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절차



※ 증빙서류: 3페이지 [붙임1] 참고 (제출처: wisestudent@ggu.ac.kr)

※ 학기 말 증빙서류 제출은 국내 취업자에 한함.

4. 신청기간: 2025. 8. 12.(화) ~ 2025학년도 2학기 학기 중 (취업 시 바로 신청)

※ 조기취업 출석인정은 조기취업 확인 날로부터 재직기간에 한하여 인정함. (신청 후 반드시 교학지원처로 연락)

5. 신청방법: 학생역량시스템 - 수업/성적 - 조기취업 신청 (증빙서류 메일 제출)

6. 유의사항

가. 출석인정은 조기취업 확인 날로부터 재직기간에 한함.

나. 조기취업자는 재학기간 내 중도퇴사할 경우 재직기간에 한해서만 출석으로 인정하며, 퇴사 즉시 학업에 복귀하여 잔여 수업을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마쳐야 함. (이직 및 퇴직 시 교학지원처로 반드시 연락 필요)

다. 교과목에 따라 시험을 볼 경우,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와 학생 간 사전 일정 조율하여 결정.

라. 성적평가 시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에 따라 정상수업 참여자와의 형평성(시험, 과제물 등을 참작)을 고려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음.

마. 기말고사 기간 전주(보강주)에 반드시 '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'를 제출하여야 함.
(국내취업자에 한함) ※ 미제출 시 출석인정 불가

7. 문의사항: 교학지원처(041-731-3214)

2025. 8. 12.

교 학 지 원 처

[붙임1]

2025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유형별 제출 증빙서류

연번	분류	제출시기	증빙서류	확인사항	비고
1	국내 취업자	취업 시	출석인정신청서 1부	지도교수 날인 포함	-
			재직증명서 1부	입사일, 재직기간 표기	-
			4대보험 가입확인서 (또는 사업자등록증) 1부	-	-
		학기 말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	-	-
2	해외 취업자	취업 시	출석인정신청서 1부	지도교수 날인 포함	-
			해외취업비자 사본 1부	-	미국 취업의 경우, OPT* 대체 가능
			근로계약서 1부	입사일 및 회사 직인 표기	해당 서류 발급이 어려울 경우, 일자리 제안서 및 재직증명서 대체 가능

※ OPT*(Optical Practical Training):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학생이 1년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